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전 제물포구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 유지〉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72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1. 28.

다. 회부연월일 : 2026. 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2026년 7월에 시행 예정임.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함.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의 의회의원 정수는 총 11명이었는데,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의회의원 정수의 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 통합이나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통합의 경우처럼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물포구의 의회의원은 중구와 동구에서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9항 신설).

Ⅲ.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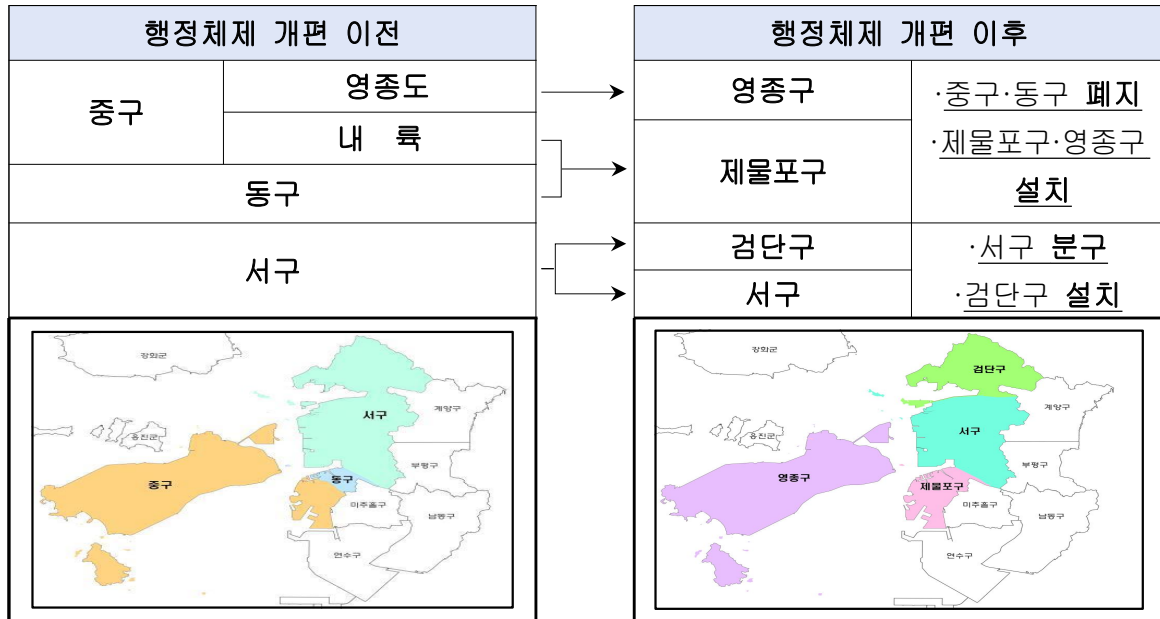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 출범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와 동구의 관할구역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으로 통합되는 구역의 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역과 같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 ⑧ (생략) <u><신설></u>	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와 동구의 관할구역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으로 통합되는 구역의 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역과 같다.</u>

현행법은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하도록 하며, 현행법 부칙 제3조는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

단구의 의회의원 선거를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일에 실시하도록 규정¹⁾하고, 해당 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개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조례로 결정되는데 이 때, 의원정수 산정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26. 2. 기준 인천광역시: 122명)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²⁾, 자치구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선거에 관한 특례) ② 신설구 및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의회의원과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각각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의 의회의원과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함3).

<인천광역시 자치구·군 선거구 현황>

	읍면·동 수	인구수	세대수	선거인수	선거구 수	지역구 의원 정수
제물포구	18	99,086	51,399	90,493	3	10
영종구	6	134,274	65,421	111,610	1	3
검단구	8	263,943	108,489	214,022	2	6
계양구	12	278,327	129,389	249,945	4	9
서구	16	392,066	175,716	334,013	4	12
연수구	15	411,091	170,751	339,900	5	11
미추홀구	21	419,908	208,881	371,427	4	13
남동구	20	484,353	224,910	422,291	6	16
부평구	22	493,721	225,955	435,699	6	16
옹진군	7	19,643	12,342	18,464	3	6
강화군	13	69,764	36,240	63,876	2	6

※ 참고로, 신설·분리되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서구의 선거구 수 및 지역구의원 정수는 종전의 선거구 및 정수를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2)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되, 읍·면·동 통합이 있는 때에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통합 전 통계에 따를 수 있다.

3)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물포구의 경우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종전 구의회의원 정수는 총 11명(지역구 10명·비례대표 1명)이지만, 제물포구 출범 시 인구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⁴⁾ 상 자치구의회의 최소정수인 7인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⁵⁾.

이에 개정안은 제물포구의회의원 정수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려는 취지로 보임⁶⁾.

참고로,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및 2014년 통합청주시 출범 시에는 관련 법 부칙에서 통합자치단체의회의원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바 있음⁷⁾.

다만,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를 시·도별 자치구·

4)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5) "제물포구 개편하면 막대한 민원... 기초의원 정수 최소 11명으로 늘려야", 최기주, 중부일보, 2025.5.1., "인천 제물포구의회의 의원 수 확대 필요...동구의회, 제물포구 출범 연구", 이민우, 경기일보, 2025.5.19., "출범 앞둔 제물포구, 기초의원 정수 최소 11명 유지 목소리", 김도윤, 인천투데이, 2025.6.26. 등

6) 참고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2025. 6.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음.

7)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선거에 관한 특례) ② 창원시의 의회의원은 2010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선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한다. 이 법 시행 후 창원시의 의회의원 보궐선거등(「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을 말한다)의 선거구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선거에 관한 특례) ② 청주시의 의회의원은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선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한다. 이 법 시행 후 청주시의 의회의원 보궐선거 등(「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을 말한다)의 선거구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26. 2. 기준 인천광역시: 122명)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물포구의회 의원정수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내 타 자치구 및 군의 의원정수 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성 및 주민 요구의 반영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또한, 창원시와 청주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단순히 통합한 형태(창원시: 창원·마산·진해, 청주시: 청주·청원)이므로 기존 도의회에서 결정한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에는 종전 중구를 내륙지역과 영종도지역으로 분리하여 내륙지역과 종전의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영종도지역을 영종구로 함에 따라 자치구·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 등이 상이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종전에 결정된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공직선거법」상 자치구·시·군의회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선거구역은 하나의 시·도의원선거구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특정 지역의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유지하는 조항을 둘 지역부는, 시·도 내 타 지역과의 형평성(표의 등가성) 및 기존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